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3월 30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8년 4월 9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3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8년 4월 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가.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 군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과 규제개혁의 심의조정 기능의 근거로 「평창군 민원제도개선 및 규제개혁협의회 운영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위 법에서 규제 심사기구의 설치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이 아닌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위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장(부군수),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 이내로 구성
- 준용규정(안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수당·

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준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용호)

-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음.
-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외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2.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 규제의 등록·공표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군정의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도시주택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제4조(간사)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담당이 된다.

제5조(준용)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수당·여비 등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